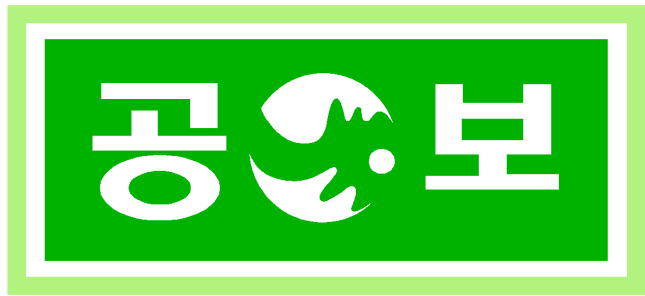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868 호 2014. 1. 27(월)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20호[하천점용허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21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22호[주택건설사업계획(농소운동장지역주택조합)승인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23호[하천점용허가 고시]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24호[도로명주소 고시] 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25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26호[하천점용허가 고시] 10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63호[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80호[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2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83호[하천 유지관리 작업단 채용 시행계획 공고] 2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86호[세대주 명단 작성비용 공시] 2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87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등록 공고] 30

회 관									
--------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 33조제6항 및 「하천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SK텔레콤 주식회사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52-6번지					
점용위치	어물동 1240-1번지	하 천 명	금천			
점용목적	- 통신용 전주설치	점용면적 (㎡)	구 분	일시	영구	
			지방하천	-	4	
점용기간	○ 일 시 -					
	○ 영 구 2014. 1. 27. ~ 2018. 12. 31.					
토지 소재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하천구역	소유자
	구,군	동,리				
	북구	어물동	1240-1	천	4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 21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점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2014. 1.22.	2014 - 4	울산 북구 화산로 33번길 휴먼시아 101동503동	김현섭	북구 동해안로 1708번길 일원 지선	18.0	2014.1.1. ~ 2018.12.31.	활어수족관 운영에 따른 관료매설 및 해수인수	조건부 허 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 2014 - 2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농소운동장지역주택조합)승인 고시

농소운동장지역주택조합 대표 정기락외 1인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복구 호계동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 2B 1L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 8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1월 2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계획 승인 내역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사업주체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호계2길 3(호계동)

나. 성 명 : 농소운동장 지역주택조합 대표 정기락외 1인

3) 사업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호계동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 2B 1L일원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고
사 업 주 체	◦ 농소운동장 지역주택조합 대표 정기락외 1인	
사 업 위 치	◦ 호계동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 2B 1L외 4필지	
대 지 면 적	◦ 18,012.70㎡	
건 축 면 적	◦ 3,158.7063㎡	
연 면 적	◦ 44,799.2061㎡	
건 폐 율	◦ 17.54%	
용 적 륜	◦ 199.10%	
동 수(주/부)	◦ 5동 / 6동	
세 대 수	◦ 336세대	
주 택 형 별	◦ 일반민영 아파트	
사 업 비	◦ 80,134,000 천원	

2. 사업시행기간 : 2014. 2. ~ 2016. 5.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동법 제14조 『건축신고』, 동법 제20조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4. 승인관련 서류 : 복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 33조제6항 및 「하천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주 소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260					
점용위치	연암동 152-2 외 12필지	하 천 명	연암천 외 4개소			
점용목적	- 공업용수공급 관로 매설	점용면적 (㎡)	구 분	일시	영구	
			지방하천	- 2627		
점용기간	○ 일 시	-				
	○ 영 구	2014. 1. 23. ~ 영구				
토지 소재지	소재지		지 목	편입면적(㎡) 하천구역	소유자	
	구,군 북구	동,리 연암동				지 번
			152-2	천	1,758	국토교통부
	"	"	958-1	"	62	"
	"	"	50	제	186	농수산부
	"	"	47	천	31	"
	"	"	47-1	"	5	"
	"	"	958-15	"	52	국토교통부
	"	무룡동	935-216	"	48	"
	"	"	935-148	"	58	"
	"	산하동	920	"	225	"
	"	"	925	"	37	"
	"	"	929	"	22	"
"	"	932-3	"	36	"	
"	신명동	282-1	"	107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4 - 24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1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수동3길 7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 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01. 2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호유지구 198 61	울산광역시 북구 수송3길 7(호계동)	2014-01-27	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3-12-30	
2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808-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63(중산동)	2014-01-27	울산의산업을활성화시키자는 취시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6-18	
3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91-2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1길 6-1(매곡동)	2014-01-27	기존자연마을인신기마을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4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91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1길 6(매곡동)	2014-01-27	기존자연마을인신기마을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5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320-1	울산광역시 북구 황토진길 38(신현동)	2014-01-27	기존마을자연부락명칭인황토마을명칭을사용하여서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8-09	
6	울산광역시 북구 기대동 444-2	울산광역시 북구 가동길 13-23(기대동)	2014-01-27	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하는이름으로부누구나인숙한이름이다.	2004-08-09	
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87-3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로 51-9(호계동)	2014-01-27	동대산인근에위치한구혈단지내지역이므로도로명부여하였다.	2001-03-22	
8	울산광역시 북구 임포동 992-5	울산광역시 북구 밤어진순환도로 1399(임포동)	2014-01-27	밤어진길대를순환하는도로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1-03-22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4 - 25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1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약수7길 15-16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약수7길 15-16	2014.01.27.	건축물대장 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석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01. 2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 33조제6항 및 「하천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윤주원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03-1					
점용위치	천곡동 1024-10, 23	하 천 명	천곡천			
점용목적	- 통신용 전주설치	점용면적 (㎡)	구 분	일시	영구	
			지방하천	73		
점용기간	○ 일 시 2014. 1. 27. ~ 2014. 2. 25.					
	○ 영 구					
토지 소재지	소재지		지 번	편입면적(㎡)		소유자
	구,군	동,리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북구	천곡동	1024-10, 23	천	56	1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63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가. 안전행정부의 “공용차량 교체기준 제도개선 사항”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용차량 교체기준 개선
- 나. 지방자치단체별 관용, 공용차량 두가지 제명으로 사용되고 있어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제명 통일

2. 주요내용

- 가. 공용차량 교체기준 개선
 - 대 상 : 승용(업무), 승합, 화물용 자동차
 - 개선사항
 - 현행 : 최단운행연한 7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충족시 교체가능
 - 개선 : 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 초과시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은 7년 이상)

• 개선 세부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승용 (전용)	최단운행연한 7년 +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	현행유지
대형승합	8년	-	”
특수용	7년	-	”
승합 (경·소·중형)	최단운행연한 7년 +	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개 선
화물용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용(업무)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명 통일

· (현행) 관용, 공용차량 두 가지 제명 사용 →(개정) “공용”으로 통일

* 국가행정기관 : '06. 3월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명 변경('관용' → '공용')

3. 근거법규

가. 안전행정부 권고사항(안전행정부 공기업과-239(2014. 1. 10.))

나. 울산광역시 회계과-1002(2014. 1. 13.)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교체 기준 제도개선사항 통보”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2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과
(전화번호 : 052-241-7312, 팩스번호 : 052-241-7309)

6. 참고사항

규칙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2014 - 호

울산광역시 복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울산광역시 복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울산광역시 복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의 “관용차량의”를 “공용차량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 “최단운행기간 및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를 “차량 관리·운행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한다.

제16조제1항의 “관용차량담당”을 “공용차량담당”으로 한다.

제5장의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한다.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차량관리 및 운행기준(제4조 관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
승용 (전용·의전용)	대형·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장 ◦ 부구청장 ◦ 구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용 (업무용)	대형(중형 및 다목적차량에 한정함)·중형·소형 및 경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합용(대형) :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 특수용 :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 승합용(중·소형 및 경형) 및 화물용 :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 비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를 따른다.
2. 특수용 : 청소차, 구급차, 분노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그 밖의 특수차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기 관 명] (전화번호)</p> <p>문서번호 수 신</p> <p style="text-align: right;">발 신</p> <p>차 례: 차량 경수배정 요청</p> <p>1. 「출산판역시 출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의 경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비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차량 경수배정 요청내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①차량 소속기관</th> <th>②차종</th> <th>③차명</th> <th>④차명 연식</th> <th>⑤사용 부서</th> <th>⑥요청 경수</th> <th>⑦경수요청 구분</th> <th>⑧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객경여산액</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9"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p>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객재정량을 명시한다.</p>	①차량 소속기관	②차종	③차명	④차명 연식	⑤사용 부서	⑥요청 경수	⑦경수요청 구분	⑧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객경여산액	비 고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승합용 화물용 특수용</td> <td style="width: 20%;">대형·중형·소형 및 경형</td> <td style="width: 20%;">· 단위부서</td> <td style="width: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합용(대형) :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 특수용 :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더 7년을 경과한 경우 · 승합용(중·소형 및 경형) 및 화물용 :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더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1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①차량 소속기관</th> <th>②차종</th> <th>③차명</th> <th>④차명 연식</th> <th>⑤사용 부서</th> <th>⑥요청 경수</th> <th>⑦경수요청 구분</th> <th>⑧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객경여산액</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9"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p>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객재정량을 명시한다.</p>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 단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합용(대형) :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 특수용 :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더 7년을 경과한 경우 · 승합용(중·소형 및 경형) 및 화물용 :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더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①차량 소속기관	②차종	③차명	④차명 연식	⑤사용 부서	⑥요청 경수	⑦경수요청 구분	⑧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객경여산액	비 고	()								
①차량 소속기관	②차종	③차명	④차명 연식	⑤사용 부서	⑥요청 경수	⑦경수요청 구분	⑧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객경여산액	비 고																																	
()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 단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합용(대형) :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 특수용 :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더 7년을 경과한 경우 · 승합용(중·소형 및 경형) 및 화물용 :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더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①차량 소속기관	②차종	③차명	④차명 연식	⑤사용 부서	⑥요청 경수	⑦경수요청 구분	⑧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객경여산액	비 고																																	
()																																									

현 행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차 례 표: 차량(차량) 변경 승인요청

발 신

1. 「운전면허시 및 운전차량 관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차량) 변경 승인을 요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현차량)

① 차량 소유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경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일수	⑨ 등록번호	⑩ 비 고

나. 변경할 차량(차량)

① 차량 소유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경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적용차량부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⑧ 차량구입비	⑨ 비 고

비고: 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차 례 표: 차량(차량) 변경 승인요청

발 신

1. 「운전면허시 및 운전차량 관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차량) 변경 승인을 요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현차량)

① 차량 소유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경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일수	⑨ 등록번호	⑩ 비 고

나. 변경할 차량(차량)

① 차량 소유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경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적용차량부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⑧ 차량구입비	⑨ 비 고

비고: 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차 례 표: 차량(차량) 변경 승인요청

발 신

1. 「운전면허시 및 운전차량 관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차량) 변경 승인을 요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

① 차량 소유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경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일수	⑨ 등록번호	⑩ 비 고

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유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경	⑤ 연식	⑥ 차량구입비	⑦ 차량구입비 및 운임비 책정여산액	⑧ 비 고

비고: 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차 례 표: 차량(차량) 변경 승인요청

발 신

1. 「운전면허시 및 운전차량 관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차량) 변경 승인을 요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

① 차량 소유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경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일수	⑨ 등록번호	⑩ 비 고

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유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경	⑤ 연식	⑥ 차량구입비	⑦ 차량구입비 및 운임비 책정여산액	⑧ 비 고

비고: 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차 례 표: 차량등록(탈소등록) 보고

발 신

1. 「운전면허시 및 운전차량 관리 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탈소등록)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탈소등록) 차량 내역

① 승인일자 및 일자	② 차량소속 기관	③ 차 형	④ 연 식	⑤ 등록 번호	⑥ 등록 또는 탈소 일자	⑦ 비 고

비고: 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탈소)증 사본(등록(탈소) 차량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차 례 표: 차량등록(탈소등록) 보고

발 신

1. 「운전면허시 및 운전차량 관리 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탈소등록)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탈소등록) 차량 내역

① 승인일자 및 일자	② 차량소속 기관	③ 차 형	④ 연 식	⑤ 등록 번호	⑥ 등록 또는 탈소 일자	⑦ 비 고

비고: 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탈소)증 사본(등록(탈소) 차량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

제 목 : 차량 정수배정 요청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 정수배정 요청내역

①차량 소속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사용 부서	⑦ 요청 정수	⑧정수요청 구분	⑨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비 고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징원·적재징량을 명시한다.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

제 목 :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차종(현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비 고
			()						

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년식	⑥ 차대 번호	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⑧ 차량구입비	비 고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

제 목 : 차량교체 승인요청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비고
			()						

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량구입비	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비 고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

제 목 : 차량등록(말소등록) 보고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말소등록) 차량 내역

① 승인번호 및 일자	② 차량소속 기 관	③ 차 명	④ 연 식	⑤ 등 록 번호	⑥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	⑦ 비 고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4 - 80호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을 제한하고자 공고하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 1. 23.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써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 포함)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 ~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매월 2일)
 - ※ 첫 시행일 : 2014년 2월 네 번째 일요일(2. 23.)

2.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행정절차법」 제21조 ~ 제47조(처분의 사전통지 ~ 준용)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1. 23. ~ 2. 12.(21일간)

4.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현황(2014. 1. 22. 현재)

구 분	계	홈플러스	메가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탑마트	홈플러스 스익스 프레스	GS 슈퍼	롯데슈퍼
대형마트	4	1	1	1	1				
준대규모점포(SSM)	7					2	3	1	

5. 의견제출 기간 : 2014. 1. 23. ~ 2. 12.까지

6. 의견제출

- 열람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www.bukgu.ulsan.kr)홈페이지, 구보 등
- 접수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 제출기한 : '14. 2. 12.(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인터넷, 우편 등(우편은 2. 12일 도착분 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 주 소 : (우 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전화/팩스 : 052)241-7702 / 052)241-7709

붙 임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4 - 83호

하천 유지관리 작업단 채용 시행계획 공고

하천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할 작업단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채용직종 및 채용인원

직 종	채용인원	비 고
하천 유지관리 인부	남9명, 여3명	2월부터 근무가능

※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직종 및 인원수 임의조정 시행 가능

2.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

가. 서류전형 : 2014. 2. 4.

나.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면접 : 2014. 2. 6. 14:00(북구청 2층 대회의실)

※ 면접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차. 합격자 유선통보(2. 5. 한)

다. 최종합격자 공고 : 2014. 2. 7.(개별 통보)

3. 응시자격

가.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에 되어 있는 자

나. 학 력 :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 만65세 이하(공고일 기준)업무특성상 연령제한

라.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신체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발행 신체검사서에 의함)

마. 우선 선발대상 : 조경분야의 유경험자

※ 울산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거 전년도 근무자는 제외

4. 사역내용

- 가. 사역기간 : 근무일로부터 8개월 정도(※ 변동가능)
- 나. 근무내용 : 풀베기 작업, 경미한 시설물 보수, 초화 식재 등의 하천관리 분야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5. 근로조건

- 가. 임금 및 수당지급 기준
 - 1) 1일단가 : 45,920원
 - 2) 주차수당 : 1주 근무만근 시 주1회 1일 지급
 - 3) 지급 및 방법 : 매월말 및 익월초 본인 계좌로 입금 조치
- 나. 근무방법
 - 1) 근무일자 : 월 ~ 금요일까지 근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원칙)
 - 2)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6. 접 수

-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2. 4.
- 나.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2층 안전건설과 치수담당
-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7. 제출서류

- 가. 이력서 1부
-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다.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문의처 : 복구청 안전건설과 치수담당(☎241-7889)

하천 유지관리 작업단 운영 계획표

작업내용	작업 인원	월별 운영계획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태화강 익새 단지 관리	3명													8개월
• 동천 유지관리	7명													8개월
• 매곡천 유지관리	2명													8개월

※ 필요시 복구 관내 모든 하천에 근무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4 - 86호

세대주 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광학식디스크(CD))	비고
일반용지	라벨용지		
50원/매 (A4용지)	222원/매 (A4라벨용지)	(990원×디스크개수)+(23원×면수)	

※ 최종 비용의 원단위 절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87호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제6조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신규공인 최초사용 가능일: 2014년 1월 27일
- 등록 사유: 민원사무용 자동인증기 신규구입
- 등록 공인

공 인 명	규 격(cm)	인 영	비 고
울산광역시북구 농소1동장인 (민원사무전용)	2.1 × 2.1 (한글전서)		자동 인증기용 (종직인)
울산광역시북구 농소1동장인 (민원사무전용)	2.1 × 2.1 (한글전서)		자동 인증기용 (횡직인)